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서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 ①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는 별표 8의3과 같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의 운전면허란 중 “제2종 보통면허”를 “보통면허”로 한다.

별표 32 제1호 다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자동변속기 조건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자동변속기 조건부 제1

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 5호의 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별 구분	총계	제1종 특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 종 소 형	원 동 기	기타 (통학용 및 업무 용)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수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자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수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자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교육용																
예비용																

별지 제105호서식의 희망 교육반란과 소지 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희망 교육반	1종 대형	1종 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원자
		대형 견인 차	소형 견인 차	구난 차	수 동	자 동	수 동	자 동		

소지 면허	1종 대형	1종 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원자
		대형 견인 차	소형 견인 차	구난 차	수 동	자 동	수 동	자 동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우측 5호의 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별 구분	총계	제1종 특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 종 소 형	원 동 기	기타 (통학용 및 업무 용)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수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자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수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자 장 내 기 능	동 도 로 주 행			
교육용																
예비용																

별지 제118호서식의 채점기 설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점기 설치	설치 대수	검사 결과	채점기 설치 검정용 차량	대수										원동기	검사결과
				1종 대형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1종		2종		2종 소형			
								수동	자동	수동	자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 별표 20, 별표 32, 별지 제93호, 제105호, 제117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고령운전자 표지(제10조의2관련)

1. 고령운전자 표지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HY헤드라인M으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3. 부착 장소

차의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 ----- ----- ----- ----- ----- -----.
1. ~ 7. (생략)	1. ~ 7. (생략)
<u><신설></u>	8. 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u><신설></u>	<u>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u> <u>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아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u>
<u><신설></u>	<u>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시)</u> <u>①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u>

② <u>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 령운전자 표지는 별표 8의3과 같 다.</u>
